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1
----------	------

2017년 4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4월 6일, 이복근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복근)

-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14년 1월)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16년 12월) 개정됨.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상기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현행 조례상 서울시 지원 사업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질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 개요 및 내용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공무원 인식 개선을 강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조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음.

구분	조항	주요내용	
		현행(내용)	개정안 (내용)
부정적 이미지 내포 규정 정비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u>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u>	----- ----- ----- 1. <u>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u>
상위법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신설>	5. <u>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u> 6. <u>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u>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능 추가	제 10조 (설치 기능) 및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u>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u>	----- ----- 3. <u>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지원사업 관련 (안 제6조 관련)

- 개정안 제6조제5호와 제6호는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제5호)’ 과 ‘한부모가족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 이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14 1월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가 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¹⁾,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 그리고, 지난 '16년 12월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²⁾.
- 본 개정안은 상기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 의무를 시 지원의 구체적 사업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아래 <표 2>에 제시된 국·시비 매칭사업(5:5)이 유일한 바, 향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임.

<표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내용	아동양육비(월 17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고교생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0천원)
예산액	29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추진실적	'16년 3,199명 264,000천원 지원

2)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능 관련 (안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2009년에 설립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현행 조례에

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센터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2017년 현재 총 25개소 운영 중)³⁾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등 허브기관으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센터의 기능에 이들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기능이 제외되어 있어, 센터 운영상 그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상기 센터의 기능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인바, 이는 센터가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질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
----------	------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6일
발 의 자 : 이복근 의원(1명)
찬 성 자 : 박마루·유 용·김기대·박운기
김제리·맹진영·장인홍·이순자
허기희·김진철·김동승·진두생
장구덕·김혜련·김경자(강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14년 1월)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16년 12월) 개정됨.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상기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현행 조례상 서울시 지원 사업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질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기능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1호 중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하고, 같은조제5호를 같은조제7호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u></p> <p>2~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2. (생략)</p> <p>3. <u>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u></p> <p>4. ~ 7. (생략)</p>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u></p> <p>2~4. (현행과 같음)</p> <p>5. <u>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u></p> <p>6. <u>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u></p> <p>7. ----- -----</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u></p> <p>4. ~ 7. (생략)</p>